



배 경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영향을 주는 수 많은 요인 때문에 많은 유산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몽골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입안자들이 채택한 조치 중 하나가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한-몽골 공동협력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2008 년부터 한국 문화재청이 후원했으며 유네스코몽골위원회와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수행했다.

본 프로젝트 체계 하에서 1 단계 활동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협력기관, 수행기관, 협의 기관 간 몇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예를 들어, 2007 년 한국의 전문가와 연구진은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수행 타당성을 검토, 결정, 기획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했다. 2008 년 몽골의 전문가와 연구진이 한국을 방문했고, 양측은 본 프로그램 수행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중심의 회의를 2 회 개최했으며 현황을 직접 검토했다. 확실히 이러한 교환 방문과 회의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발굴, 보호, 유지와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제도 도입뿐 아니라 2003 년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광범위한 활동 개시에 큰 기여를 했다.

제 3 차 공동 세미나는 2008 년 12 월 12-13 일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으며 몽골과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해 프로젝트 활동에 실질적이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공동 세미나는 몽골의 인간문화재 제도 도입 기회와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등 추후 후속 활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 구축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발굴, 등록, 보호, 전수, 개발 및 이를 위한 국가 지원 촉진 규정’ 초안,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규정’, ‘무형문화유산 발굴, 등록, 보호, 전수, 개발 및 이를 위한 국가 지원 촉진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선정을 위한 국가협의회 규정’이 마련되었고 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문화과학부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법률 문서는 프로젝트 제 2 기에서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승인했으며 이에 대한 영어 번역본은 원본과 함께 본 보고서의 부속문서로 첨부하였다.

또한, 몽골 서부지방의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 및 다른 국가의 무형문화유산보호 법적 근거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를 수행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문서, 등록부, 기록 등 상당한 양의 자료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향후 무형문화유산보호와 관련된 활동에 쓰이게 될 것이다. 서부지역은 특히 몽골 내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심지이며, 따라서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의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질문지를 작성해 현지조사 기간 동안 활용했다. 이 질문지와 함께 교육문화과학부 차관이 서명한 공식 서한 및 설문조사 가이드를 동봉해 울란바토르 시 문화예술 부서 및 모든 아이막과 아이막 지도자들에게 배포했다.

몽골 내 다양한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 비정부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 파트너 단체, 학자 및 연구자 들간에 수 차례 회의와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의견과 시각을 조사 및 검토했다.

몽골 인간문화재 제도 구축 사업 프로젝트 2 년차가 되는 2009 년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 및 수행했다.

- 중부, 동부, 고비 아이막 등 다른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지속
- 무형문화유산 문제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심포지엄과 워크숍 개최
-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임시 목록 작성
- 몽골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 초안 작성